

세부사업명	과수 생산유통지원	세목	자치단체자본 보조					
내역사업명	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	예산 (백만원)	200					
사업목적	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활용을 하여 노동력을 절감 및 고품질 과수생산을 통해 과수경쟁력 확보							
사업 주요내용	과수분야 ICT 시설(온·습도, 풍속, 강우,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 링을 위한 센서 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							
국고보조 근거법령	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(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)							
지원자격 및 요건	ICT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							
지원한도	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, 사업비 상한액 기준: 200백만원							
재원구성(%)	국고	20	지방비	30	응자	30	자부담	20
연도별 재정투입 계획	(단위 : 백만원)							
	구 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 이후			
	합 계	3,640	2,000	1,000	7,500			
	국 고	800	400	200	1,500			
	지방비	1,200	600	300	2,250			
	응 자	840	420	210	1,260			
자부담	800	580	290	2,490				
담당기관		담당과		담당자		연락처		
농림축산식품부		원예경영과		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		044-201-2255		
농림수산식 품교육문화 정보원	정보융합실		실 장 양종열 과 장 정명종		044-861-8763			
신청시기	정기(전년도 11.30.일까지)							

## 1. 사업대상자

-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
  - 사과, 배,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(시설·노지)
    - \* 10,000㎡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(최소 1,000㎡ 이상)
- 지원제외 대상자
  - 열대·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
  - 과수(품목과 무관)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

## 2. 지원자격 및 요건
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된 농업경영체(농가)
  - 조직단위로 신청한 농가, 수출 농가, 친환경·GAP·재해보험·계약재배 농가,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참여(또는 참여약정)하고 있는 농가 등 가점부여
  - ※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(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)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량 범위내에서 사업성 및 요건 등 필수 사항만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·지원

## 3. 지원대상

-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(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 장비 정보시스템 포함)
  - 온도/습도, 풍속, 강우,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
  - 관수, 시비,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
  - 과수원의 센싱·제어정보의 모니터링,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
    - \* 시설현대화 등의 농립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 지역의 동류 시설장비의 경우,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
    - ※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·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

○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·장비

- 관정, 관수관비시설, 무인방제시설, 서리피해방지, 양액시설, 자동개폐기, 환풍기 등 사전컨설팅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·장비
  - \*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
- 단,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가림시설, 비가림하우스는 지원 제외
  - \*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·원예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되는 시설·장비에 한정

#### 4. 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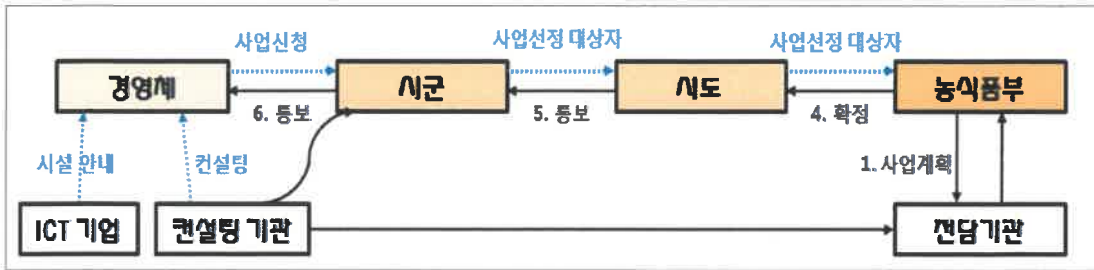
-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
  - \* 농기별 사업계획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,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, 한국농기계조합의 품질보증을 득해야 함)

#### 5.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(지원조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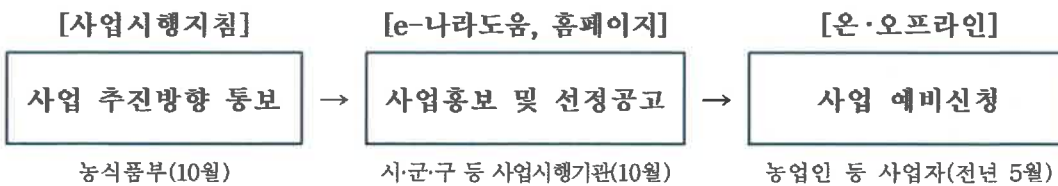
- 국고 재원 :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(FTA기금)
- 지원비율 : 국고보조 20%, 국고융자 30%, 지방비 30%, 자부담 20%
  - 융자금리 : 고정 2.0%, 변동(시중금리\*-2.0%),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
  - \* 시중금리: 농협은행에서 가장많이 대출된 자금(가계대출)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
    - \*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
- 대출취급기관 : 농협은행(농·축협 포함)
- 사업주관기관 : 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”라 함)

#### 6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표준사업비 : 노지(20백만원/ha), 시설(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/0.33ha, 단순 환경관리 7백만원/0.33ha)
  - \* 면적 및 시설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
  - \*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(100%)로 계획 수립 후, 대상농가에 지원
- 사업비 상한액 기준 : 200백만원
- ※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상기 표준사업비 및 사업비 상한액 기준에 제외되며,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기준 및 집행 등은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·원예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준용



1. 사업신청단계



○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,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.

-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
-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

○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, 농식품사업의 교육·홍보 등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○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농가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(사업계획서 등록)해야 한다.

- 다만, 정보취약계층\*으로서 사업신청 대리 등록, 집행계획·정보입력·집행내역 등록 등 e나라도움 업무대행자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 대리 신청, 피대리인 정보입력, 위임장,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.

\* 정보취약계층 :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·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, 농어촌지역 주민, 장애인, 고령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등

○ 사업신청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·시행주체에 사업신청서[첨부 2]를 제출(전년도 11월)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.

- 융자 신청자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, 융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를 제출
-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인 경우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.

**농림축산식품부**

- ③ 지자체에서 제출한 예비신청 대상자 대상 컨설팅 계획 수립(전년도 6월)
- ⑩ 시·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시·도별 내시안 안내(전년도 10월)

**지자체(시·도↔시·군)**

- ②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모집하고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(이하 전담기관)에 제출(전년도 5월)
  - \*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본 등을 포함하여 제출(개인정보는 암호화)
  -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(친환경과원관리),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전설명 결과에 따른 예비신청 대상자 포함(전년도 5월)
- ⑤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서 지정(안내)하는 컨설팅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 안내(전년도 6월)
- ⑧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, 컨설팅 결과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(전년도 9월)

**경 영 체**

- ① 과수분야 스마트팜 시설설치 희망농가 예비신청(전년도 5월)
- ⑦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, 사업비 전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·군으로 제출(전년도 8월)
  - \* 조직내 여러 농업경영체가 포함되어 신청한 경우에는 조직단위로 사업신청 가능
  -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(농·축협 포함)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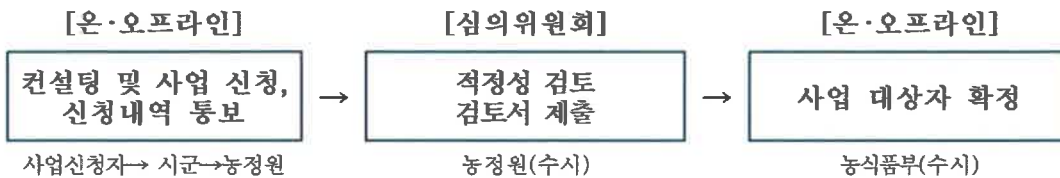
### 전담기관(농정원)

- ④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, 규격 및 서비스 기준,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(전년도 6월)
- ⑨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(전년도 9월)

### 컨설팅 기관

- ⑥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·군 및 전담기관에 통보(전년도 6~8월)
- \*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농업경영체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, 사업계획서 신청을 위한 추가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음

## 2. 사업자 선정단계



### 농림축산식품부

- ①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·도에 시달(전년도 12월)
- ② 시·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·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(전년도 12월)
- \* 컨설팅결과 및 사업비 신청내용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조정 등

### 시·도

- ③ 시·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, 농식품부 확정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·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(전년 12월)
- ⑥ 시·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(2월)

## 시·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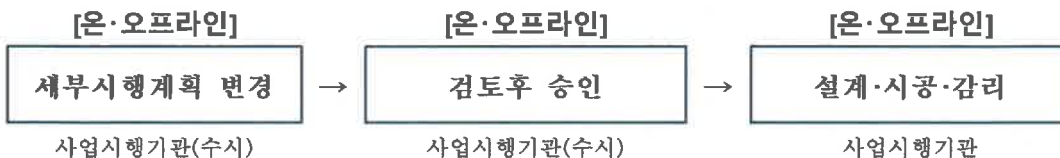
④ 컨설팅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을 토대로 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·도에 보고하고, 전담 기관에 제출(1월)

- \*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(개인정보는 암호화)
-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·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
- \* '사업대상자 선정기준'의 평가항목에 지역별·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·군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(구분)을 변경할 수 있으며, 10점 한도내에서 가점구간 내에서 항목 추가·변경 가능
- \* 본 사업자 선정 이후 중도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

### <선정 순위>

- ① 조직단위로 신청하여 연계·활용효과가 높은 농업경영체, 수출 농업경영체 등 우선 지원
  - ② ICT 융복합 수용 준비상황(시설조건, 활용조건) 및 사업지속 가능성 등에서 컨설팅 결과가 우수한 농업경영체
  - ③ 농식품부 심사기준표 표준안을 활용하고, 지역별, 사업별 여건에 맞게 가점으로 보완하여 사용
  - ④ 대상자의 필요 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
  - ⑤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
  - ⑥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 부여
  - ⑦ 선정 취소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.
- ⑤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(2월)
- 지원계획,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

### 3.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



## 설계·시공·감리

- 시장·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·시공·감리 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
- 총 사업비 기준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·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하되, 감리 표준요율 내에서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
  - \*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II-3. 지원대상(지원사업의 종류)에 제시된 개별사업 기준, 총 사업비는 재원별 사업비를 합산한 총액을 말함(국비+지방비+용자+자부담)

## 지자체

- 농업경영체(또는 조직)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·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, 시장·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
-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,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(시·군 또는 시·도)에서 변경하여 집행
-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,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함
- 지원대상 기계·장비는 반드시 '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' 품질보증 제품 사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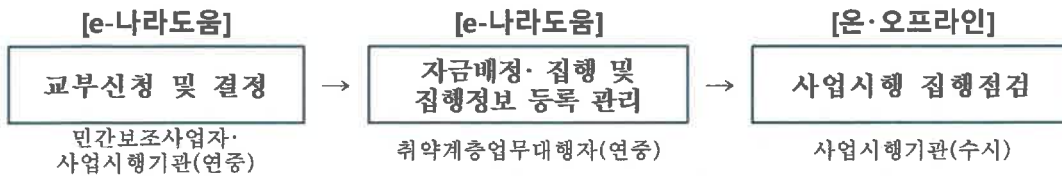
## 사업변경절차

- 시장·군수는 사업대상지역, 지원품목,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·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, 그 결과를 시·도 및 전담기관에 제출(시·도는 농식품부로 제출)
  - \*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변경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(개인정보는 암호화)
  - 시·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, 시·도는 시·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,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
- 시·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, 시·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,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
- 사업시행주체(지원대상조직)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(시·군)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



- 사업계획 변경시,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,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,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,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

#### 4.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



- 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
  - 다만,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,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
-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,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
-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
  - \* (집행관리)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
  - \* (계약) 1)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)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(위탁계약)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, 계약체결 등 수행
  - \* (정산보고서 검증) 1)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)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
  - \* (중요재산)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「보조금법」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
-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(전자세금계산서, 카드전표 등)를 등록 후 집행 등록
-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
-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

-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'부정집행 모니터링'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(45일 이내)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

## <자금배정>

### <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>

- ◇ 기성고(준공) 확인 신청(사업자→시장·군수) ⇒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(지자체→농식품부) ⇒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(사업자→대출기관) ⇒ 보조금 신청 및 지급(지자체→농식품부) ⇒ 결산·정산보고(지자체→농식품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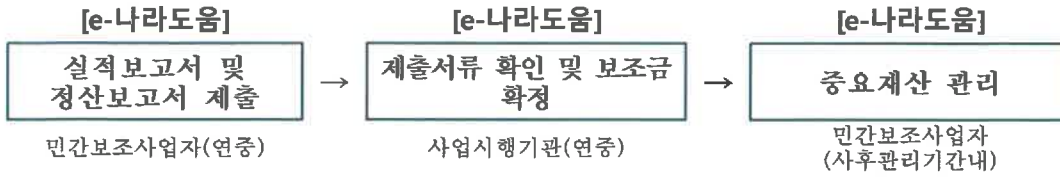
### 농림축산식품부

- 농식품부는 시·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

### 지 자 체

-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령과 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」 “사업자금 집행의 원칙”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, 「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 규정」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- 「기본규정」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(100%)이 원칙이나, 시장·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% 이상이고, 자부담 금액이 2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%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다.
-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, 환급금은 지원비율(국고, 지방비, 자부담 등)에 따라 환수 조치
  - 단,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,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·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·결정하여 추진
- 기계·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

## 5.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



-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,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(정산보고)를 등록
  -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
  -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
    - \* 보조금을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교부받은 보조사업자(비에치형)는 집행잔액, 이자 등을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직접 반납
  -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·보완 요청
-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
  - 중요재산의 현황은 「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」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
-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,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·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
  - \*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
다만,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
-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
-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,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\*를 확인한 경우 「보조금법」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,
  - \*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(지급)받은 경우,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,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
  - 아울러 「기본규정」 제78조 제2항에 따라 부도, 폐·휴업, 사업포기,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
  -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

-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  
가금, 수행배제,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 
부정수급자 등록·관리

## 〈이행점검단계〉

### 농림축산식품부

-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,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
  - 점검일정 : 연 2회(반기별 1회)
  - 점검반 : 농식품부, 전담기관(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)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
  - 점검내용
    - 사업계획 및 진척도,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,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
    - \*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

### 지자체

- 시장·군수(시·도지사)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점검을  
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
  -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결과를 활용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을  
실시하고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
  -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(영수증 등)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 
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
- 시장·군수(시·도지사)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, 현장  
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
  -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
- 시장·군수(시·도지사)는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

### 컨설팅 기관

-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 
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,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 
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·군에 제출

### 전담기관

-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, 시설설치 컨설팅,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  
현황 점검 및 확인
-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

## 《사후관리》

-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설치·공급된 시설물,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(사업의 관리책임 등)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
-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,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'부기등기'를 실시하여야 함(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) \* 비닐하우스골조는 제외
-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

재 산 명	사후관리기간		처분제한기준
	부터	까지	
- 부동산(토지, 건물, 비닐하우스골조 등)	준공일	10년간	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
- 부동산의 종물(건물내 기계설비)	준공일	7년간	
- 주요기계·장비·자재	구입일	5년간	

\*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·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, 금융기관(농업보조금 취급기관)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

## 《제재 및 처벌내용》

### 사업관리주체(시·도 및 시·군)
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,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
-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)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·결산하여 결과를 시·도에 제출하여야 하며, 시·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
-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, 「기본규정」 제78조제6항, 제79조제7항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
- \*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